



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

2022. 2.



전라남도교육청
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
【 유 초 등 교 육 과 】

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

[전라남도교육청]

I 사업개요

1. 추진목적

-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

2. 지원사업 개요

구 분	내 용
유아 교육비 지원	■ 지원자격: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 ■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5만원 ※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, 유아 교육비(5만원) 선 지원 후 발생하는 교육과정비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 가능

3. 지원신청 및 지급

가. 지원신청(유치원): 분기별 신청(공문 신청)

나. 지원금 지급: 분기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정산

II 세부추진 내용

1. 지원대상 및 기간

가. 지원대상: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유아(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9년 1~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)

나. 지원기간(유아학비와 동일):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무상교육 기간(3년)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

2.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5만원

3. 지원내용: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* 지원(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)

*학부모부담금: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
단가 인상분(2만원) 및 원비 인상 상한율(1.0%)을 반영하여 책정한 금액

순	구 분	지원 내용
1	교육과정비 학부모부담금 5만원 이상	교육과정비 5만원 감액
2	교육과정비+방과후과정비 학부모부담금 5만원 이상	아래의 순서대로 감액 ① 교육과정비 학부모부담금 우선 감액 ② 방과후과정비 학부모부담금 감액
3	교육과정비+방과후과정비+특성화활동비 학부모부담금 5만원 이상	아래의 순서대로 감액 ① 교육과정비 학부모부담금 우선 감액 ② 방과후과정비 학부모부담금 감액 ③ 특성화활동비 학부모부담금 감액

※ 총 학부모부담금 5만원 미만인 경우, 감액 후 잔액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
항목으로 편성·운영

□ 예시 □

- 1) 학부모부담금이 15만원(교육과정비 13만원, 방과후과정비 2만원)인 경우
→ 교육과정비에서 5만원 감액
⇒ 최종 학부모부담금 = 10만원(교육과정비 8만원, 방과후과정비 2만원)
- 2) 학부모부담금이 6만원(교육과정비 2만원, 방과후과정비 1만원, 특성화활동비 3만원)
인 경우,
→ 교육과정비 2만원, 방과후과정비 1만원, 특성화활동비 2만원 감액
⇒ 최종 학부모부담금 = 1만원(특성화활동비)
- 3) 학부모부담금이 5만원(교육과정비 3만원, 방과후과정비 2만원)인 경우
→ 교육과정비 3만원, 방과후과정비 2만원 감액
⇒ 최종 학부모부담금 = 0원
- 4) 학부모부담금이 3만원(교육과정비 2만원, 특성화활동비 1만원)인 경우
→ 교육과정비 2만원, 특성화활동비 1만원 감액
⇒ 최종 학부모부담금 = 0원
감액 후 잔액(2만원)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·집행

4. 지원방법: 분기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정산

5. 청구 및 정산(공문 제출)

가. 신청(유치원→교육지원청): 분기별 유아학비 청구인원 기준으로 청구[붙임2, 시트1]

나. 지원(교육지원청, 도교육청): 신청인원 및 금액 확인 후 분기별 보조금 교부

다. 정산(유치원): 분기별 청구 시 전분기 보조금 정산내역[붙임2, 시트2] 제출

※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(e-유치원)상 청구·정산내역(인원) 확인 필요

6. 보조금 산정: 보조금 산정에 관한 기준은 「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」 상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기준(입학·학기중·퇴원)과 동일하게 적용

□ 공통기준 □

○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**보호자의 자격 신청일**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세부 사항은 아래 기준을 따름(소급지원 불가)

○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계획 내 『교육일수』는 지원금(보조금)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,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상의 『수업일수』와 무관

※ **수업일수**: 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
(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 제8조 관련)

※ **교육일수**: “유아학비 지원계획”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

7. 유의사항

1) 「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」에 따른 원비 상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예정

※ 향후 유아학비 및 원비 점검 시 상한제 미준수 등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

2)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경감액을 안내한 가정통신문 또는 원비 고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

III

행정(협조) 사항

1. 사립유치원

가. 학부모 홍보 강화

- 1) 증빙자료 제출: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및 만3~5세 급식비 지원 내용 및 금액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경감액을 안내한 가정통신문 또는 원비 납부 고지서 등 증빙자료 제출
- 2) 제출방법: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
- 3) 제출기한: 2022. 4. 1.(금)
- 4) 안내사항(예시)

구분	원비(월) (A)	정부지원금(유아학비) (B)	교육정보조금(C)	최종 학부모부담금 (D)=(A)-(B)-(C)
교육과정비	360,000	280,000	50,000	30,000
방과후과정비 (특성화활동비포함)	90,000	70,000	-	20,000
계	450,000	350,000	50,000	50,000

나.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[붙임2] 제출 기한

- 1) 유치원→교육지원청: 유아학비지원시스템(e-유치원) 분기별 청구·정산(3·6·9·12월 및 다음연도 2월)기한과 동일
 ※ 신청 및 정산 원아 정보(입학일, 퇴원일 등)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(e-유치원) 상 정보와 일치해야 함(유아학비 점검 시 점검 예정)
- 2) 교육지원청→도교육청: 유아학비지원시스템(e-유치원) 분기별 청구·정산(3·6·9·12월 및 다음연도 2월) 마감 후 5일 이내

2. 교육지원청

가.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단 운영

- 1)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숙지 및 증빙자료 수합·확인 철저
- 2) 증빙자료 제출기한(교육지원청→도교육청): 2022. 4. 8.(금)

- 3) 유치원 연 1회 방문 점검(유아학비·기본급보조·학급운영비 부정수급방지 점검과 병행 실시, 업무 담당자가 다를 경우 협의하여 가급적 1회 방문에 함께 점검)

나.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분기별 지급 및 정산 내역 확인 철저

- 유아학비지원시스템(e-유치원)의 유치원별 청구내역/정산내역상 청구·정산 인원 및 중도 입·퇴원 유아 확인하여 지원금액 검토 철저

※ 확인방법: 유아학비지원시스템(e-유치원)→청구/정산 메뉴→**청구금승인**: 유치원별 청구인원 및 중도입학 시 입학일 확인→**정산금승인**: 유치원별 정산인원 및 중도퇴원 시 퇴원일 확인

붙임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신청 및 정산서식(유치원) 1부.